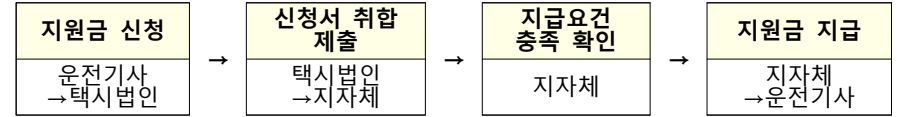


 보도자료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 2022. 6. 2.(목) 12:00 2022. 6. 3.(금) 조간	배포 일시 2022. 6. 2.(목) 12:00
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	책임자 과 장 박일훈 (044-202-7404)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(044-202-74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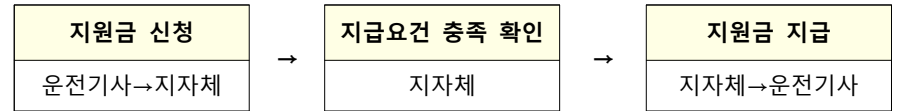
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
-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「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」 사업을 시작한다.
-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
 -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,250억원 규모(7만 5천명)로 편성됐다.
 - * 동 사업은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된 바 있으며, 이번 6차 지원 사업은 지난 5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
-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
 - 2022년 4월 1일 이전(4월 1일 포함)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.
 - 다만,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 - 한편,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‘소상공인 손실보전금’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.

-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,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.



- 다만,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.



-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(6월 3일 예정)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.
-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,
 -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,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.
 - *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,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
- 이정식 장관은 “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”이라며,
 - “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,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개요



□ 사업 목적

-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*(법인택시 운전기사)에게 고용·생활안정 지원

*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

□ 지원예산: 총 2,250억 원(7.5만명 × 300만원)

□ 사업수행주체: 자치단체

□ 지원 내용

-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

□ 지원대상 및 요건

-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'22.4.1. 이전에 입사하여 '22.6.3.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

① 소득(매출액) 감소 요건

- 신속한 집행을 위해 1·2·3·4·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·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
-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,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

② 근속기간 요건

-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(한국교통안전공단) 기준으로 '22.4.1.(4.1일 포함) 이전 입사하여 '22.6.3.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(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(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)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'22.6.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)

□ 사업 절차

-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·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

* 사업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